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연수구보

■ 구정 방향 ■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07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727호 2012. 12. 31.(월)

【조 례】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3호(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5호(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786호(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0

【규 칙】

-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512호(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3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97호(도로명주소 고시) 15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2-98호(지적기준점 성과고시) 16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3-1호(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17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사회적기업”의 실체에 맞도록 수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선 구매 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실체에 맞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수정 (제2조) ○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구체화 (제15조) -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2. 3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을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법질서의 통일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법령 변경(제1조) ○ 위원회 위원수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증원(제3조) - 기존 15명 ⇒ 30명으로 증원 ○ 위원의 임기 내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규정(제4조) ○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제9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2. 3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 반영 등 - 조례 제2조 제1호 중 “법 제6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로 개정하고, “직무” 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각 목으로 구분하여 개정 -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로 개정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 반영 - 조례 제5조제1항 중 “폐질등급” 을 “장애등급” 으로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2. 3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의회의원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를 말한다.
 - 가.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행하는 공무
 - 나.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공무
 -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폐회 중의 공무 여행을 포함한다)
2.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청 씨름선수단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 이유 ○ 단원의 임용자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주요 내용 ○ 단원의 임용자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개정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로 개정(제7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이름(제명) 띄어쓰기 - 법령이름 낫표(「」) 붙이기(제1조, 제7조) - 적절하지 않은 아라비아 숫자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개정 (제7조, 제9조, 제13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2. 31.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786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설치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임용자격) 단원의 임용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 감독 및 코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구청장이 임용한다.
2. 선수는 해당학교장이 추천하는 지원서 및 인천광역시씨름협회장 또는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의 추천서를 검토하여 우수선수를 임용한다.

제9조 및 제13조 중 “다음 각호의 1에” 를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 개정 이유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용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직업의 안정성 보장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면 관련 조항 정비 ☐ 주요 내용 ○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임용기간 2년 규정 삭제(제5조) - 직원에 대한 고용 안정성 보장 ○ 자원봉사센터 직원 신규임용 최저연령(신설), 근무 상한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에 대한 사항 개정 및 신설(제5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고남석

2012. 12. 31.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칙 제51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③ 직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 근무상한연령, 당연퇴직, 직권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의 근무상한연령은 65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12. 31.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19번길 29-33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100-1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19번길 29-33	미부여	2009-07-09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100-1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519번길 29-35	미부여	2009-07-09	비류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1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 12.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 고시 제2012 - 9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기준점의 번 호	세계측지계		중부좌표		가리좌표		비고
	X	Y	X	Y	X	Y	
1450			436025.41	170564.79			재설치
1166			433262.91	171227.22			신설
1452			436097.57	170411.38			재설치
505			435206.73	171480.68			신설
506			433417.22	171048.36			신설
551			433129.42	170780.33			신설
935			435884.65	172154.27			신설
1017			435906.87	170646.16			신설
1032			436017.72	170466.67	-219.34	-17719.24	신설
1210			435062.74	170685.51			신설
1220			435073.93	170502.71			신설
1234			435100.61	170577.69			신설
1283			435421.97	173098.49			신설
1408			436283.87	169944.98	45.97	-18241.34	신설
1423			436521.17	170126.92			신설
2373			436520.81	168855.72	281.23	-19331.08	신설
2450			436577.31	168725.26	337.56	-19461.60	신설
2455			436549.66	168788.97	309.99	-19397.86	신설
기준점의 명칭				지적도근점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중부좌표			
토지소재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설치일				2012. 12. 26			
표지의 재질				철재			
측량성과 보관장소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I . 2013년도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함(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금액)

나. 건물 시가표준액

- ①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산출체계도, 산출요령)
- ② 적용지수(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 ③ 경과년수별 잔가율
- ④ 가감산특례(가산대상 및 가산율, 감산대상 및 감산율, 적용요령)
- ⑤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 ⑥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 특례
- ⑦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

<부록> 건물시가표준액 일람표

2. 세부결정사항

연수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Ⅱ. 201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1. 결정항목

가. 차량(40,253종)

①정의 ②용어해설 ③적용요령 ④시가표준액 산출예시

나. 기계장비(11,083종)

①정의 ②종류 ③기계장비 연도별 잔가율표 ④적용요령 ⑤산출예시

다. 선박(135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감가율 ③적용요령 ④산출예시 ⑤기준가격

⑥잔가율표

라. 항공기(198종)

①정의 ②내용연수 및 잔가율 ③적용요령 ④항공기 기준가격표

마. 시설물(2,503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바. 부수시설물(1,733종)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내용연수 및 감가율 ④기준가격표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사. 입목(97종)

①용어정의 ②용어해설 ③종류 ④시가 조사방법 ⑤시가표준액 산출방법

⑥시가표준액 적용요령

아. 어업권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시가표준액 적용방법 ⑤양식 품종별 표준시설내역

자. 광업권

①용어정의 ②광업권의 대상 ③용어해설 ④시가표준액

차.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

①용어정의 ②종류 ③시가표준액 ④시가표준액 적용방법

하. 지하자원

①용어정의 ②지하자원의 대상 ③용어해설 ④시가표준액

2. 세부결정사항

연수구 세무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타물건별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